

외부감사계약서

(주권상장법인과 K-IFRS적용법인용)

감사의뢰인 : 에스와이페널 주식회사

감사인 : 대주 회계법인

위의 감사의뢰인(이하 “회사”라 한다)과 감사인 양자는 「공인회계사법」 제21조와 제33조에 따른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하여 이하 “감사” 또는 “외부감사”라 한다)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0조와 동법 시행령 제168조, 제170조에 따른 분기재무제표와 반기재무제표(이하 “중간재무제표”라 한다)의 검토(이하 “검토”라 한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감사와 검토의 목적 등) ①이 계약에 따라 감사인이 행하는 감사는 외감법 제2조에 따른 재무제표(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대한 감사를 목적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다. 따라서, 감사인의 감사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중요하게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재무제표 전반에 대해 중요하지 아니한 위배사항까지 적발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는 회사의 제반법규의 불이행·허위 또는 부정행위 사항을 방지하거나 발견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재무제표 작성과 적절한 공시, 회계자료의 유지, 내부통제제도의 구축과 운용, 회계정책의 선정과 적용, 회사 자산의 보호에 대한 책임은 회사에 있다. 회사의 이와 같은 책임은 이 계약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하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로 경감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감사보고서 수신인을 위한 것이지 제3자가 의존할 만한 상황이나 특정 거래를 예상하여 계획·수행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회사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특정 제3자에게는 잠재적 이해관계가 되는 항목들이 강조되지 않거나 특정거래와 관련하여 제3자가 상이하게 해석할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한다.

⑤ 이 계약에 따라 감사인이 행하는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중간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4호의 규정에 중요하게 위배되어 작성된 사항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하여 주로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을 통해 감사보다는 낮은 보통수준의 확신을 소극적으로 표시하는데 있다.

제2조(감사와 검토의 대상) ① 감사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회사의 재무제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각 분기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의 각 반기재무제표

2. 연결재무제표

가. 연차재무제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재무제표

나. 중간재무제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의 각 분기재무제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의 각 반기재무제표

② 이 계약 체결 당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며, 감사대상사업연도말 현재 연결대상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사와 검토보수의 변동에 대해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3조(감사인의 업무수행 기준) ① 감사인이 실시할 감사의 기준은 외감법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감사인은 감사기준서 200 (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 문단 23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감사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절차와 다르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항에는 동 기준

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얻을 수 있도록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계획하여 실시한다. 감사인의 감사는 재무제표상의 금액과 공시내용의 근거가 되는 증거를 시사의 방법에 따라 검증하는 것을 포함하며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내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경영자가 적용한 회계원칙과 유의적 회계추정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③ 회사는 회사가 구축한 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상의 통제절차가 재무제표 왜곡표시사항을 예방하거나 적시에 발견·수정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내부적 고유한계와 감사인이 준수하는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가 회사의 전체거래중 일부의 자료에 대하여 표본시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감사의 고유한계 때문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④ 감사인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감사의 대상이 되는 문서의 진실성을 신뢰하며, 감사인의 감사범위는 회사의 임직원에 의한 위조, 변조 또는 허위 등에 대한 조사절차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문서 때문에 회사의 재무제표상 왜곡표시를 감사보고서에 언급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⑤ 감사인이 실시할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제정한 분·반기재무제표검토준칙(이하 “검토준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⑥ 중간재무제표의 검토는 감사시 요구되는 정보보다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검토준칙에 따라 질문과 분석적 절차 등에 의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데 있다. 따라서, 감사인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감사의견은 표명하지 아니한다.

⑦ 제1조제2항·제3항·제4항, 제3조제1항·제3항·제4항은 중간재무제표의 검토에 준용한다.

제4조(감사와 검토의 실시기간) 감사인이 실시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검토의 예정기간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감사와 검토의 장소) 회사는 감사와 검토의 실시기간중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장소와 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와 검토의 책임자) 감사인의 감사와 검토 책임자는 김현식이며, 변동이 생기는 경우 감사인은 사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회사에 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제출기한에 따라 제출한다.

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

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중간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나.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연차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2.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검토보고서

가.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 : 중간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나. 연차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 연차재무제표기준일후 _____일까지

②연속감사의 경우 해당사업연도 감사보고서 제출은 제1항의 제출기한을 준용한다.

③감사보고서의 형태와 내용은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④회사는 제1항에 따라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는 보고서 외에 감사인이 제공하는 보고서(보고서의 초안 등)를 사용 또는 인용하거나 신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감사와 검토보수) ①제2조에 따른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검토보수(이 조에서 “감사보수”라 한다)는 감사업무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투입시간과 직급별 보수율에 따라 결정하며, 직급별 보수율은 담당자의 책임범위, 경험, 기술요건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결정한다. 이 방법에 따라 추정한 감사인의 제17 기의 감사보수는 별지 제3호 서식 회계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따라 산정한 일금 구천오백만 원정(₩ 95,000,0000)으로 하고, 제17 기 이후 연속감사의 경우 감사보수는 해당사업연도의 실제투입시간과 직급별보수율을 기준으로 하여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감사보수 추정의 기준이 되는 투입시간은 회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서 정한 적절한 수준의 업무지원과 협조가 이루어져서 효율적으로 감사업무가 수행된다는 가정하에 추정한 것이다. 따라서, 신규사업의 양수, 합병, 신규사업의 개시, 추가적 분·반기 검토, 지분법 적용대상회사와 연결대상회사 수의 변동, 추가 보고서의 발행 등에 따른 업무 범위의 변동이나 회사의 적절한 업무지원과 협조 등의 변동에 의하여 실제시간이 예산시간과 _____%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상기 감사보수는 동 차이에 대하여 평균시간당 보수금액을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만큼 가감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실제발생시간이 예산시간과 _____% 이상 차이가 나거나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사인은 회사에 해당 내용을 가능한 한 미리 알리도록 하고, 추가(차감)보수금액은 회사와 감사인이 최종 청구 이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감사인은 제1항의 감사보수 외에 감사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호에 열거하는 실비변상적 비용을 회사에 별도로 청구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장비(숙박비, 교통비 등)

2. 인쇄·복사비

3. 통신비와 각종 조회관련 비용

4. 실험비

5. 감정료 · 자문료

6. 측량비

7. 기타 전 각호와 유사한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감사보수는 공급가액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⑤ 회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감리대상으로 선정되어 감사인이 회사의 감리대용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 대외기관에서 회사와 관련된 조사업무가 이루어지면서 감사인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와 관련한 소송 등과 같이 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감사인 변경시 후속감사인이 감사인의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에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감사인의 실제 투입한 시간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다만, 이에 따른 보수금액은 회사와 감사인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20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보수는 회사와 감사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감사보수 등의 지급) ① 회사는 감사인에게 제8조에 따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와 검토보수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분기 · 반기재무제표검토 수행시

구 분	지급기한	금 액
착 수 금	년 월 일	
1차중도금(1분기)	년 월 일	
2차중도금(반기)	년 월 일	
3차중도금(3분기)	년 월 일	
4차중도금(실사와 조회)	년 월 일	
잔 금(정산보수)	년 월 일	

2. 반기재무제표검토 수행시

구 분	지급기한	금 액
착 수 금	2016년 5 월 31 일	20,000,000
1차중도금(반기)	2016년 8 월 31 일	25,000,000
2차중도금(중간감사)	2016년 10 월 31 일	25,000,000
3차중도금(실사와 조회)	년 월 일	
잔 금(정산보수)	2017년 3 월 31 일	25,000,000

② 제1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은 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연속감사의 경우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해당금액의 _____%를 제1항에 의한 지급기한과

금액에 준하여 지급한다.

④회사는 감사인의 귀책사유로 제7조에서 정한 보고서 제출일을 경과하여 보고서가 제출될 경우, 그 경과일에 대하여 회사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8조에 따른 감사보수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상기 제1항의 착수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이 그 기한을 2주이상 경과한 경우, 회사는 총 경과일에 대하여 감사인의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제8조에 따른 감사보수액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감사와 검토자료의 제공 등) ①회사는 감사와 검토의 대상이 되는 재무서류를 다음 각 호의 지정일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감사 : 정기총회 6주일전(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45일이내)

2. 중간재무제표검토 : 중간재무제표기준일로부터 1월이내

3. 연결재무제표감사 : 정기총회 4주일전(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

②회사는 감사인이 외감법 제6조에 따라 감사(중간재무제표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실시에 필요한 회사와 종속회사, 그리고 중요한 피투자회사(이하 “부문”)의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때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에 필요한 회사의 업무와 재무상태를 조사할 때에는 성실하게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감사인의 감사상 필요한 서면 또는 구두질문에 신속하게 답변하여야 하며,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감사인에게 적시에 통보하고, 감사종료(중간재무제표 검토종료를 포함한다)시에는 재무제표 등이 사실과 같다는 것을 포함하여 감사에 중요한 사항을 기술한 경영자 확인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감사인의 감사와 검토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회사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와 감사인은 이러한 정보를 제공 또는 취급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제출기한은 관련규정이 변경될 경우 동 규정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이 상호 합의하여 조정한다.

⑥감사인이 회사의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경우, 회사는 이를 승인하고 적절한 수단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회사의 부문과 등사 외부감사인의 협조) ①회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부문재무정보

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가적 적격성을 갖춘 외부감사인(이하 “부문감사인”)이 감사 또는 검토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감사인이 요청하는 부문에 대한 부문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에 대한 정보를 본 계약일 이후 지체없이 감사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인의 검토결과 부문감사인이 적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예 : 국외의 부문감사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받고 있는 감사인이 아닌 경우 등)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계약일 현재 부문감사인의 독립성과 적격성 확인이 요청되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도 추후 부문감사인에 대한 독립성과 적격성 확인을 추가적으로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제2항 후단을 적용한다.

④ 회사는 부문과 부문감사인으로 하여금 감사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 또는 검토를 위하여 부문과 관련되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이 제시한 일정에 따라 부문 재무정보와 이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보고서가 제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감사인이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감사인과 부문감사인간 법규상 가능한 정도까지의 제한 없는 커뮤니케이션
2. 부문의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부문감사인과 부문 지배기구와 경영진간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
3. 부문 재무보고 사항에 관한 규제기관과 부문간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감사인에게 통보
4. 회사는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도까지 다음의 사항을 감사인에게 협조
 - 가. 부문 정보에 대한 접근
 - 나. 부문 지배기구와 경영진과의 커뮤니케이션
 - 다. 부문감사인의 감사 문서에 대한 접근을 포함한 부문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 라.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업무를 감사인이 수행하거나 부문감사인이 수행하도록 요청

⑤ 상기 각 항의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감사기준 600에서 정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는 사유에 해당되므로 감사인의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12조(감사인의 비밀준수) ① 감사인은 감사와 검토업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법적 또는 직업적으로 공개할 권리나 의무가 없는 경우에, 적절하고 명확한 승인없이 감사인 또는 소속기관 외의 외부에 누설하지 않거나 직무상 지득한 기밀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보조자의 감사와 검토상 비밀누설 행위에 대하여 감독책임을 진다.

② 감사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감독기관(회사가 미국 상장법인일 경우 PCAOB를 포함한다)이나 법원, 기타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인의 국내외 감사품질관리를 위해 검사와 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 등에는 감사와 검토상 지득한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회사는 본 계약기간 동안 감사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기 또는 전기의 감사 또는 검토 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감사인의 임직원이나 감사인과 제휴관계에 있는 다른 Network Firm의 임직원에게 회사로의 이직을 권유하거나, 이들을 고용 또는 회사의 이사를 포함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작성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직위에 추천하거나 임명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훼손하여 감사와 검토업무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감사인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제13조(해지) ①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회사에 이미 청구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은 감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감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의 해지 시점이 중간재무제표 검토 또는 중간감사 착수일 이후임에도 기 청구보수액이 해당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해당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2분의 1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의 해지 시점이 결산감사 착수일 이후인 경우에는 회사는 감사인에게 해당 사업연도 감사계약보수액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인의 사정에 따라 1개 사업연도 기간중에 해지를 할 때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사업연도 보수액의 2배를 회사에 배상한다. 다만, 감사인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감법 제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④ 감사인은 회사가 제8조제1항의 감사와 검토보수 지급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외감법 제6조제3항과 제4항에서 정한 감사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감사인의 업무수행기간까지의 보수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감사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이미 영수한 해당 사업연도의 보수액을 반환한다.

⑤ 제3항 단서의 경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은 자동해지된 것으로 하며, 감사인은 회사가 이미 지급한 해당사업연도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계약보수액은 반환한다.

⑥ 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의무는 소멸된다.

- 제14조(배상책임과 면책) ①재무제표의 작성과 공시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므로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조, 변조, 허위 기타 부정한 자료를 감사인에게 제공하거나 감사와 검토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감사인에게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감사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위와 같은 회사의 잘못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제3자로부터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당한 경우 회사는 감사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그 방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감사인이 소송 결과 지게 되는 책임에 대하여도 회사는 감사인을 면책시킬 의무가 있다.
- ②감사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와 검토 수행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감사인은 이 계약에 의거 수령하는 해당연도 감사보수의 _____ 배(몇배 한도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한도로 배상책임을 지며, 그 밖의 감사인의 감사와 검토 수행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와 비용 등에 대하여 감사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③회사는 감사인의 고의적인 위약행위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계약에 따라 감사인이 회사에 제공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어떠한 형태의 배상청구, 책임, 비용 등에 대하여 감사인의 모든 책임을 면제한다.
- ④회사가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자료제공 등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감사와 검토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⑤회사가 감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에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와 상이한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책임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 감사인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 제15조(감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이용) ①회사는 유가증권의 신규상장, 기타의 용도로 국내 외 관련 법규상의 제출서류(이하 “회사의 재무서류”라 한다)에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를 포함하거나 감사인을 언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인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동의 요청은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서류와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를 대조·검토한 후에 서면승인과 동의서를 제공한다.
- ③제2항에 따른 업무는 이 계약과는 별개 업무이며, 회사와 감사인은 그 업무의 범위와 보수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한다.
- ④회사는 재무서류(이와 유사한 서류를 포함한다)와 함께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인쇄매체·인터넷 웹사이트 등

전자매체를 통하여 출판·복제·유통·편집을 하고자 할 경우 또는, 기타의 문건에서 감사인을 언급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문서의 내용을 감사인에게 제공하여 감사인이 사전에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감사인의 승인이 없으면 문서의 내용을 확정하거나 배포할 때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 또는, 감사인에 대한 언급을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3.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인쇄매체, 전자매체, 기타 다른 매체로 복제될 경우에 회사의 감사받은 재무제표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는 주석을 포함한다.
 4. 감사인은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받은 재무제표와 그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기타 정보가 회사의 재무서류에 적절히 기술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⑤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를 하는 경우, 회사는 감사인에게 전자공시 전에 전자형태의 관련 문서를 모두 제공한다.
- ⑥감사인이 제공한 감사보고서나 검토보고서를 회사가 다른 형태의 문서나 매체로 변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오류 등에 대해서는 감사인의 책임이 없다.

제16조(수사 등에 관한 통지의무) 회사는 회계연도 중 회사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 조사 또는 감리 등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감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표명한 회계기간에 대하여 수사, 조사 또는 감리 등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감사계약기간 만료 이후라도 지체 없이 감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된 타문서에 대한 책임) 회사가 감사인의 사전승인없이 회사의 재무서류(이와 유사한 서류를 포함한다)에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키거나 첨부한 경우와 감사인에 대하여 언급한 경우, 감사인은 동문서에 포함된 정보의 검토, 입증, 기타 어떠한 절차의 수행책임도 없으며, 회사는 이로 인하여 감사인이 소송 또는 소송외적으로 부담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인터넷을 통한 정보소통에 대한 책임) 감사인이 전자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사에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바이러스 검사 등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한 감사인은 회사에 대한 정보의 전자전송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감사 또는 검토조서의 소유권) 감사 또는 검토과정에서 감사인이 작성한 조서, 기타

전자문서나 전자파일 등에 대한 소유권은 감사인에게 있다.

제20조(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목적 등) ①감사인이 실시할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와 관련된 사항은 이 계약에서 정한 것 외에는 필요할 경우 별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계약서에서 정한다.

②제1조제4항, 제3조제1항·제4항, 제4조, 제5조, 제6조, 제10조제2항·제3항·제5항,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검토에 준용한다.

제21조(상호합의)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합의로 정하며, 이 계약조문의 해석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②이 계약의 일부 조항이 구속력이 없거나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며, 무효인 조항도 법의 한도에서 최대한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석한다.

제22조(관할법원)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의 제기는 피청구인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기타사항) 이 계약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회사와 감사인이 각기 기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24조(특약사항) ①

(감사인 변경에 따라 신규감사인이 조서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와 모회사 감사인이 조서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동의에 관한 사항, 감사인 변경에 따라 조서열람 등으로 발생되는 비용의 청구 등)

2016년 4월 18일

감사의뢰인

사무소소재지 : 124-81-77032

(전화번호 : 에스와이페널(주) 홍영돈

상호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61(세류동)

리치타워 7층

대표이사 : 제조, 도매 셀드위치판넬



감사인

사무소소재지 : 120-81-48350

(전화번호 : 대주회계법인 권장시)

감사인명 :

서울·강남구 남부순환로 2913(대치동)

대표이사(대표) :

회계 회사

서비스 공인회계사



[별지 제1호 서식]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

지배회사명 :

(단위 : 백만원, %)

연번	종속회사명	직전사업 연도말의 자산총액	지분율			③ 연결 대상 구분	비고
			① 지배회사	② 종속회사	계		

회사의 대표이사 :

(인)

※ 작성요령 : 1)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지분율

- 2) 지배회사의 종속회사가 다른 종속회사에 대하여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
- 3) 연결대상구분(1. 국내종속회사, 2. 해외종속회사, 3. 연결제외)